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장 소: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센터 정문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0)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한정애 · 여영국 의원실

□ 기 자 회 견 순 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사 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대표

□ 발 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진 부위원장

□ 발 언 ----- 정의당 여영국 의원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 사회자

□ 현장발언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 특별상 선정 취지 및 선정 결과 발표 ----- 사회자

□ 특별상 발언 1 -----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 특별상 발언 2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루리 간호사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낭독 : 매일노동뉴스 부성현 대표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7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11
□ 기자회견문	14
□ 참고자료1 : 산재사망과 처벌현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성	16
□ 참고자료2 : 한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심각성과 과제	22
□ 참고자료3 : 기업처벌 현황 (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31

□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했습니다.
-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입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2018	삼성중공업	- 2017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이던 경남 삼성중공업 기제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서 하청노동자 6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7	현대중공업	- 2015년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6년에 특별근로감독 이후 4월에 6명 사망, 11월에 1명이 사망하였음.

2016	산업재해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하고 녹색기업으로 인증 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을 표면상으로 보였으나, 2015년 7월 울산공장 하청노동자 6명 사망사고에 있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기고 원청업체로 책임을 지지 않았음.
	시민재해	삼성 서울병원	- 메르스 사전 예방 조치 실패 및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방해, 지연하여 메르스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역할을 하였음.
2015	(건설업)현대건설		- 2007년, 2012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현대중공업		- 2014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8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4	(건설업)대우건설, (제조업)현대제철		- 현대제철,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3	(건설업)한라건설		- 2012년 한 해 동안 한라건설의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LG화학		- 2012년 LG화학은 OLED 폭발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하였음.
2012	(건설업)현대건설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STX 조선해양, TK케미칼		- 2011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1	(건설업)대우건설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3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10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5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10	(건설업)GS건설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4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제조업)대우조선해양		- 2009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6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9	코리아2000		- 2008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4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8	한국타이어		-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감시와 통제,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1년6개월 사이 15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했음
2007	현대건설		- 2006년 한 해 동안 노동자를 10명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음.
2006	GS건설		- 2005년 10월 6일 'GS 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붕괴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게하였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명단

2018	우정사업본부	-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여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과 노동조건을 악화를 방치하여 26명의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국토교통부	- 2017년 10건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21명이 노동자가 죽는 거듭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사고예방에 실패하였음.
2017	교육부	-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망, 사고, 자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에 대한 학생보호조치와 안전장치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았음.
	우정사업본부	- 거대공기업으로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노동자를 과로사하게 하였음.
2016	전국경제인 연합회 (전경련)	- 전경련은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안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음.
	질병관리본부	- 전염병 방지, 대응 역량 부족으로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대되게 하여 38명 사망, 186명 확진, 16,572명 격리 등의 사태로 확산되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기업 (옥시 외 21개 제조·판매 기업)	- 제조물에 대한 책임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여 239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고 1,528명이 피해를 입게 하였음.
2015	-	-
2014	규제개혁위원회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해야 하나, 사회안전망이나 환경 노동 분야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어 노동환경을 저해시켰음.
2013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2	삼성전자	- 인터넷 투표를 통해 70.1% 득표율로 삼성전자가 살인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2011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를 통해 노동자가 20명을 사망하게 하였음.
20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지역희망일자리 추진단	- 희망근로 작업 중 27명을 죽게 만들고, 2,372명을 다치게 한 바 있음.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자료

- 대상 년도 : 2018년
- 근거자료 :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 통계기준 참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19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중대재해 보고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누가봐도 기업살인 위험의 외주화 : 건설 · 하청노동자편

1)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1위	포스코건설	10명	전원 하청
2위	세일전자	9명	4명 하청
공동 3위	포스코	5명	전원 하청
	대림산업	5명	4명 하청
	(주)한화	5명	
공동 6위	CJ대한통운	4명	전원 하청
	현대산업개발	4명	전원 하청
	대우건설	4명	3명 하청
	두영건설	4명	

[노동부 2018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19 최악의 살인기업 : 포스코건설

○ 선정근거

-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2018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포스코건설은 2018년 한 해 동안 10명이 사망함으로써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포스코건설은 2018년 이전에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은 그야말로 죽음의 작업장이었다.

산재발생일	사망	부상	사고경위	발생형태
2018년 1월 10일	1	0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해체 작업중 갱폼에 몸이 맞다 충격으로 하청 노동자 1명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2일	4	6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 하청노동자 4명 사망	떨어짐
2018년 3월 7일	1	0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피아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넘어져 붐대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3월 21일	1	0	(부산)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 터널 바닥 설치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맞아 사망	맞음
2018년 5월 28일	1	0	(충남) 서산 소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증설공사 중 LPG 저장탱크 발판 틈에 빠져 추락 사망	떨어짐
2018년 11월 15일	1	0	경위 확인 불가(언론 미보도)	갈림
2018년 12월 21일	1	0	(부산) 명지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 공사장에서 낙하물금지망 설치 중 하천노동자 사망	떨어짐

- 포스코건설 이영훈 대표이사는 3월 2일 취임일성으로 “산업현장의 최상위 가치는 안전이다. 1%의 실수는 100%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임직원 모두 지행합일의 정신으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부산 해운데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의 노동자가 다쳤다. 그 후에도 인천, 충남, 부산, 아파트, 터널, 석유화학단지 등 지역과 현장을 가리지 않고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서야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서도 포스코건설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2015-17년 3년간 13명이 사망한 죽음의 현장이기도 하다.

- 부산엘시티 사건 이후, 고용노동부와 포스코건설이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은 것이다. 부산동부지정청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다. 부산 엘시티 사건이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기술팀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기각되었고, 2018년간 산재사고가 난 포스코 건설 현장소장 16명이 형사입건 되었다. 머리가 아닌 꼬리만 처벌은 받는 구조인 것이다.

- 포스코건설은 사후 대책에 있어서도 부실한 대책만을 세웠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와 각종 비리로 노동자 사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실질적 기업책임자의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3) 최악의 살인기업 사망재해 현황

○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산재사망 절반 줄이기’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9개 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50명 중 34명이 하청업체의 노동자였다(68%).

○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을 거치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른바 김용균(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실상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임이 밝혀졌고 그마저도 시행령 등을 거치며 점차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2019년에도 한술제지, 건설 현장 등에서 하청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다.

○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산재사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에,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궁극적인 이윤의 집결지이자 실질적 결정권자인 (원청)기업이 직접 처벌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계속되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1) 포스코 건설 10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2018-01-10	떨어짐	광영개발(주)	1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18-03-02	떨어짐	송학건설건설기계(주)	4	부산 해운대구 우동
2018-03-07	맞음	(주)일창건설	1	인천 연수구 송도동
2018-03-21	맞음	우원개발(주)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2018-05-28	떨어짐	에스탱크엔지니어링(주)	1	충남 서산시 대산읍
2018-11-15	깔림	태운건설(주)	1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2018-12-21	떨어짐	(주)두인에스엔디	1	부산 강서구 명지동

(2) 세일전자 9명 사망(제조업) : 4명 하청

2018-08-21	화재	기업명 확인불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	----	----------	---	---------------

(3) 포스코 5명 사망(제조업) : 전원 하청

2018-01-25	질식	(주)TCC한진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
2018-06-30	끼임	(주)광희	1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4) 대림산업 5명 사망(건설업) : 4명 하청

2018-11-29	깔림	홍우산업	1	경기 광주시 장지동
2018-02-26	떨어짐	백광도시개발	1	경기 화성시 동탄면
2018-04-09	떨어짐	(주)기창건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18-10-03	떨어짐	경진기업(주)	1	서울 동작구 흑성동
2018-09-18	끼임	-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5) (주)한화 5명 사망(제조업)

2018-05-29	폭발	(주)한화 대전사업장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	----	----------------	---	---------------

(6) CJ대한통운 4명 사망(건설업, 기타업종) : 전원 하청

2018-01-30	떨어짐	현대전막사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2018-03-06	떨어짐	(주)기린산업	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2018-08-05	감전	(주)케이엠에스	1	대전 대덕구 문평동
2018-10-29	부딪침	(주)케이엠에스	1	대전 대덕구 문평동

(7) 두영건설 4명 사망(건설업)

2018-05-19	떨어짐	(주)두영건설	4	충남 예산군 신양면
------------	-----	---------	---	------------

(8) 현대산업개발 4명 사망(건설업) : 전원 하청

2018-08-17	기타	(주)윤주건설	1	서울 중랑구 면목동
2018-09-14	끼임	HDC아이서비스	1	서울 송파구 가락동
2018-12-14	깔림	보경이엔씨(주)	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018-01-16	떨어짐	유창석건설	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 대우건설 4명 사망(건설업) : 3명 하청

2018-04-15	깔림	도양기업(주)	1	부산 서구 암남동
2018-05-08	떨어짐	(주)광훈토건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2018-09-19	깔림	천지개발(주)	1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2018-08-03	기타	-	1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3. 특별상

1)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 서부발전 / 보건복지부

2) 서부발전

○ 선정근거

- 특별상으로 선정된, 서부발전은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5년(2014~2018년)을 살펴보았을 때 서부발전에서 유독 더 많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발전5사 전체 사망자 20명, 서부발전 7명). 발전 5사 중 가장 위험한 작업장인 서부발전의 실상은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발전 5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게 한 대표적인 ‘살인’ 공기업이다. 그 살인의 이면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1년간의 10여번의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와 발전소 시설 개선 필요 요청에 대한 목살이 있었다.

- 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모범적인 노동현장을 조성해야함에도,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적극 밀어붙이며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의적인 기업살인 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서부발전의 기업살인행위는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죽음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

-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서부발전의 산재사망은 다른 발전 4사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서부발전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현장을 만들어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만들어내지 않았다.

[표 2] 2014년~2018년간 발전 5사 산업재해 현황

사고 건수 구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정규직	4 (7.4%)	0 (0%)	1 (1.9%)	0 (0%)	2 (5.3%)	0 (0%)	0 (0%)	0 (0%)	1 (3%)	0 (0%)
하청 협력	54 (94.7%)	3 (100%)	51 (98.1%)	4 (100%)	38 (100%)	7 (100%)	130 (100%)	3 (100%)	33 (97%)	3 (100%)
총계	57 (100%)	3 (100%)	52 (100%)	4 (100%)	40 (100%)	7 (100%)	130 (100%)	3 (100%)	34 (100%)	3 (100%)

최근 5년간(2014~2018)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산업재해 현황 (고용노동부자료 재가공)

- 오히려 5년간 무재해 사업장이라 ‘자랑’ 하며 22억 4679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최악의 살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무재해 사업장을 자랑했던 서부발전에게 특별상을 수여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추진하기를 요청한다.

3) 보건복지부(간호사, 의사의 연이은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

○ 선정근거

- 최근 병원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15일 故 박선옥 간호사가 서울 아산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끊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 5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가 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후 업무전환 되었고, 일터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었다.

- 의사의 과로사도 문제다. 2019년 2월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 평균 11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다가 당직 다음날 사망했다. 같은 달 4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진료실에서 과로사 했다. 그는 귀가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였으며,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작년 센터장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하다 사망하고 말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전공의들의 경우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공의법에 의한 주당 최대 80시간까지만 일하도록 보호받지 않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병원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과로사와 과로자살, 일터괴롭힘에 의한 자살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년 전남대학교병원 40대 간호사가 10년 넘게 일하던 과에서 다른 과로 배치된다는 통보를 받고 자살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9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4명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병원 자체가 병원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잔인한 방식의 운영구조가 일차적인 원인이고, 이를 방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는 일부 병원만이 아니라 전국의 병원을 과로사와 일터괴롭힘 사업장으로 만들고 있다.

- 간호사들의 자살은 상업화된 의료현장, 수익성에 밀려 상대화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질, 부족한 간호인력, 위계적인 병원 내 조직문화, 간호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대에 가까운 위계적 태움 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간호직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왜곡된 조직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 故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정부가 미뤘었던 간호인력 대책「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①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②유휴간호사 재취업을 통한 활동간호사 공급 확대, ③야간전담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책은 모두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실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십 년간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간호인력기준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간호인력의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하지만 병원자본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 보건복지부 소관인 전공의법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6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80시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마저도 1/4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off)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해야 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미비하다는 증거이다.

- 의료인의 안전과 건강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인 보건의료 인력확충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정비 등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간호수가차등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인력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2019년 4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매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처벌조항 등이 보완되고 심의위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 법안이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의료인들의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끊임없이 위협 당할 것이다.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 살인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매년 평균 2,400여 명, OECD 산재사망률 1위 대한민국. 한국의 그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해야 하는宿命이다. 정부가 산재통계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전체 산재사망 노동자가 몇 년 후면 10만 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는 삶이 행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본인의 임기를 마칠 때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재벌대기업 청부 입법, 탄력근로제 개악을 통해 장시간, 공짜노동을 늘리려 하고 있다. 병원, 게임, 방송 업종 등에서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허울뿐인 약속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은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산재사망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주요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95%에 달한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 하고,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처벌에서 모조리 빠져나가고 있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의 하청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서울메트로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전부였다.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포스코건설이다. 2018년 한해에만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전부 하청노동자였다. 또한 포스코 제철현장에서 5명이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3위인 대림산업은 사망 노동자 5명 중 4명이 하청노동자였다. CJ대한통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전원 하청노동자다. 위험의 외주화로 건설, 제철소, 조선히청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이며 노동자 건강권의 적폐인 것이다.

노동부의 부실감독과 기업 봐주기 행태도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018년 1월 발생한 노동자 질식사망사고와 관련해 열흘 동안 52명에 달하는 감독반을 꾸려 특별감독을 실시해놓고도, 위반이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조합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감추는 것이다.

또한 포스코건설에서 5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하자, 고용노동부는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를 특별감독 했다. 하지만, 11월, 12월 사망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게다가 LCT 사건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이 뇌물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은 우려스럽다. 현장 안전책임자 3명(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하도급업체인 기술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작년 말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원청 처벌강화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산재 사망 시 원청처벌 강화는 경총과 건설협회, 보수 전문가들의 공세에 밀려 사라졌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예방해야 한다.

2019년 특별상을 받게 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은 작년 말 고 김용균 님의 사망이전에도 8년간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다. 노동자들이 1년 동안 10번 넘게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과, 28건의 발전소 시설 개선 요구를 했지만 묵살했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가 근본적인 문제였다. 작년 12월, 김용균 어머니의 노력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28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노동부의 하위령안에는 도급승인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투쟁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김용균 노동자가, 구의역 김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외주화 금지가 담긴 산안법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특별상은 보건복지부다. 연이은 보건의료인들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병원사업장의 구조적 문제, 인력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십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책임이 크다. 과로사는 병원사업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과로사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한다. 단기 집중적인 노동이 일상인 곳에서의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59조 특례 전면 폐기와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과로사 합법화를 열어주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산재사망 절반 감축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말의 성찬이 아니라면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멈추고 위협의 외주화 금지를 명확하게 담은 산안법 하위령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개발과 미래투자에는 관심 없고 썩 노동력으로 장시간 노동과 위협의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이다.

2019년 4월 24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 참고자료1 : 산재사망과 처벌현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필요성

1. 한국 산재사망의 심각성

1)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001년 이후 경제적 손실 284조 7,479억원

- 2001년~2017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54만3천797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4만217명에 달함. 동기간 정부 통계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84조 7,479억원임. 이는 2018년 정부 총예산 470조의 60%가 지난 17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임.
- 한국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임.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함.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비해서도 1.3배 높음
- 한국은 화물운수, 건설기계, 버스, 킥 서비스, 택배 등 다수의 위험업종 종사 노동자가 특수고용으로 250만 명의 산재가 통계에서 적용제외 되어있음.
- 2012년 노동부 산재통계 처리 규정 일방적 변경. <예방통계> 명목으로 ‘사업장의 교통사고’사고 발생 1년경과 사망’ 등 통계에서 제외하여 국내외로 발표되는 산재통계가 축소되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노동부 산재 통계 자료 취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통계 인용 분석)

년도	산재(명) ①	산재 사망(명)②	경제적 손실액 (단위, 억원)	기준변경 통계③	사망통계 차이④
2017	89,848	2,209	221,801	1,957	-252
2016	90,656	2,040	214,002	1,777	-263
2015	90,129	2,066	203,955	1,810	-256
2014	90,909	2,134	196,328	1,850	-284
2013	91,824	2,233	189,771	1,929	-304
2012	92,256	2,165	192,564	1,864	-301
2011	93,292	2,114	181,269	1,860	-254
2010	98,645	2,200	176,619	1,931	-269
2009	97,821	2,181	173,159	1,916	-265
2008	95,806	2,422	171,094	2,146	-276
2007	90,147	2,406	162,114	2,159	-247
2006	89,910	2,453	158,188	2,238	-215
2005	85,411	2,493	151,288	2,282	-211
2004	88,874	2,825	142,995	2,586	-239
2003	94,924	2,923	124,090	2,701	-222
2002	81,911	2,605	101,016	2,605	
2001	81,434	2,748	87,226	2,748	
합계	1,543,797	40,217	2,847,479	*노동부는 2002년 이전 통계	
평균	90,812	2,366	167,499	분류 없어 조정 못함	

① 산재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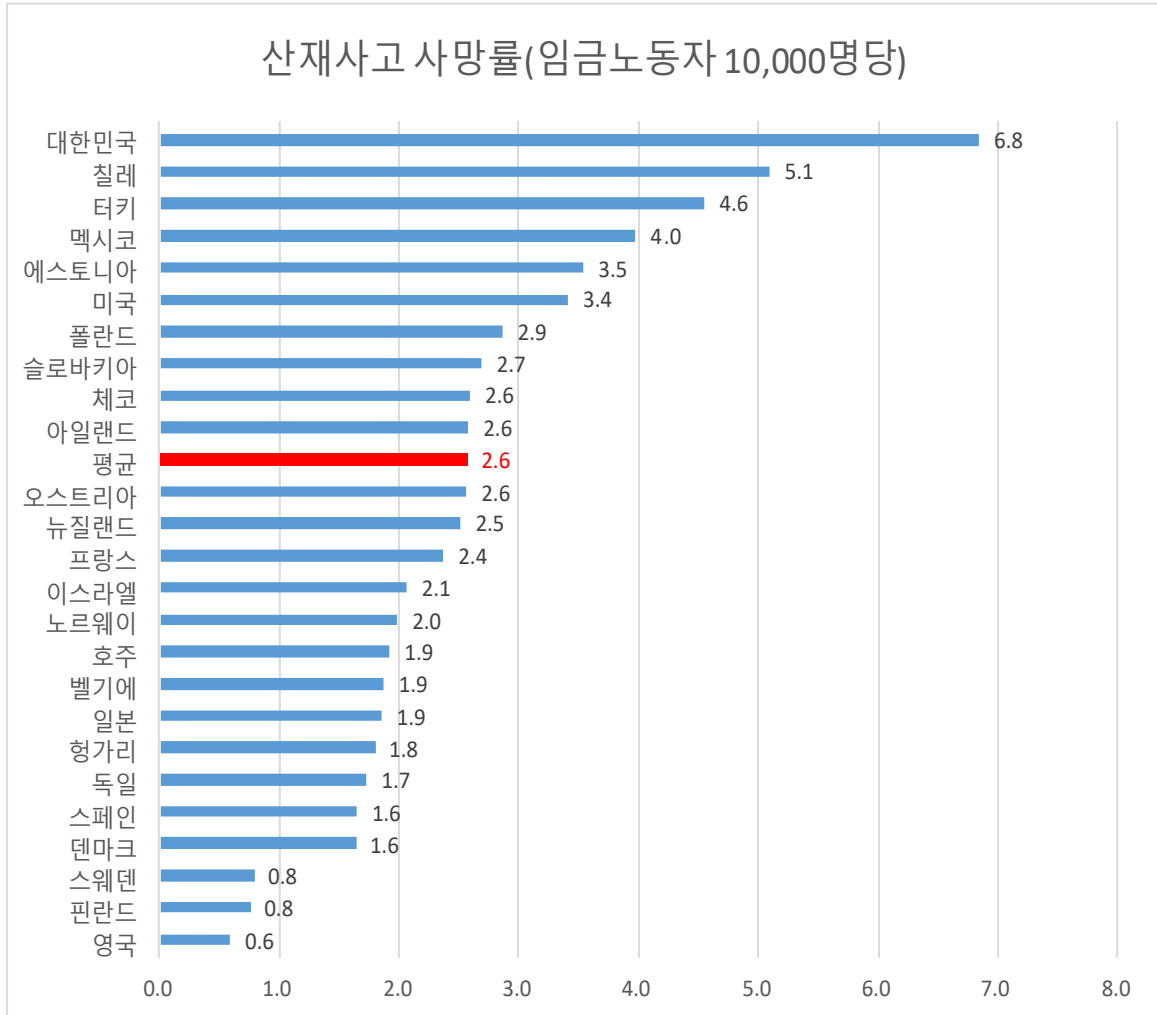
② 산재사망: 근로복지공단 산재사망 통계 (2012년 변경 전 통계 기준 적용)

③ 노동부 통계 변경 : 2012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10년 치 통계 변경 발표

④ 노동부 통계 변경 기준에 따른 산재사망 통계 차이

2) 여전히 OECD 산재사망 1위

- OECD 가입 국가 중에 산재사고 사망 만인률은 0.68로 여전히 1위임
- 이는 칠레, 터키, 멕시코 등 보다 높은 것이며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비율임.



[표2 OECD 주요국가의 산재사고 사망률 (십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 2013년 기준)

※ 자료 출처 : ILOSTAT에서 재가공

2. 산재사망 처벌의 현황

※ 상세한 처벌 현황은 첨부 자료 참조

-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집중 제기 되고,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확산되었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은 변화가 없음
-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원청의 공장장등 책임자 급은 무혐의나 집행유예만을 선고 받고 있음
- 2015년 서울지하철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이었던 강남역 스크린 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결국 사망한 노동자의 개인과실로 결론이 내려졌고, 산재은폐를 위해 119를 돌려보냈던 충북 에버코스 지게차 사고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못함.

코리아 2000	40명 사망	물류창고 화재	벌금 2,000만원
이마트	4명 사망	냉동기 수리 질식사고	산안법 위반 벌금 100만원
GS건설	폭발	4명 사망, 20여명 중경상	GS건설 현장소장 벌금 1,500 / 법인 처벌 안받음 / 하청회사 벌금 200
아이코트	폭발	4명 사망, 9명 상해	대표이사 징역 2년, 집유 3년 / 안전관리책임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아이코트 법인 벌금 500
한라건설	침몰	12명 사망	현장소장 징역 2년 /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 1년 4개월 /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유 2년 / 한라건설 벌금 500 / 석정건설 벌금 1000
삼성전자	가스누출(불산)	1명 사망, 4명 상해	유독물 관리자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 벌금 300~700 / 협력업체 임직원 3명 벌금 400~700 / STI서비스 벌금 1000 /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는 사고의 직접성
현대제철	가스누출(아르곤)	5명 사망	부사장 징역2년 집유3년
롯데건설	추락	1명 사망	롯데건설 벌금 700 / 하청업체 벌금 1000 / 롯데건설 임원 집행유예
서울시	수몰	7명 사망	원청 서울시 무죄 / 시공사 현장소장 금고2년 집유3년

SK건설	붕괴	4명 사망	SK건설 현장소장 징역 8개월 집유 2년 / 하청회사 현장소장 징역 1년 집유 2년
한화케미칼	폭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케미칼 과장 금고1년 집유 2년 / 한화케미칼 대리 금고1년 집유 2년
에버코스	차량 충돌	1명 사망	지게차 운전자 금고 10개월 집유 2년 / 현장 지휘자 금고 8개월 집유 2년 / 에버코스 벌금 700 / 에버코스 대표 벌금 700
코레일	스크린도어 사고(성수역)	1명 사망	과실치사상 무혐의. 하청회사 과태료 30
코레일	스크린도어 사고(독산역)	1명 사망	하청회사 벌금 100 / 코레일 처벌x
현대삼호중공 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교통사고 처리
현대삼호중공 업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미포조선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징역 4월 집유 1년
현대중공업	화재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중공업	에어호스에 목이 줄림	1명 사망	자살로 처리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대표이사 무죄 / 조선본부장 벌금 800
현대중공업	낙하물	1명 사망	해양본부장 벌금 700
현대중공업	압사	1명 사망	벌금 150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조선사업대표 벌금 300
현대중공업	압사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약식 벌금 200
현대중공업	철판 전도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야간 실족	1명 사망	약식 벌금 500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검찰 무혐의 처분
현대중공업	추락	1명 사망	약식 벌금 300

3. 외국의 기업살인법 제정 현황

- 캐나다 호주는 2003년과 2004년에 영국은 2008년에 기업 살인법이 제정 됨
- 영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음. 기업 살인법 적용으로 1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6억 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후 기업 살인법 적용하여 처벌한 기업이 10여건에 이르고, 법 제정은 영국 산재사망 감소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해외의 기업처벌법 현황

국가	제정년도	법 명칭	주요 내용
캐나다	2003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산재사망, 재난 사고 포괄.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책임자 형사 처벌
호주 준주	2003	“산업 살인법”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 형사 처벌 (수상도 기소 대상)
영국	2007	“기업 살인법” “기업 과실치사법”	산재사망, 재난사고 포괄, 사망사고 유발 기업 매출액 기준 벌금 부과

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

☑ '세월호 참사'는 규제되지 않은 자본과 대안도 없이 공적인 안전 기능을 해체하기 시작한 국가의 무능·무책임이 낳은 위험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은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산업재해와 대형재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져 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세월호 참사'의 아픈 교훈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 ✓ 이 법의 주된 내용은,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며,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 현행법상 기업을 독자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 ✓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없어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도 기업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유인이 매우 약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이사와 주주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 ✓ 이 법으로 기업이 처벌될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책임이 없나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나요?

- ✓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그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무원이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많은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2 :한국의 과로사, 과로자살 심각성과 과제

1. 참혹한 과로사회의 현실

1) 과로사 실태

- 2017년 과로사 354명 (일본 과로사 방지법에서 정한 뇌심혈관질환 적용)
- 과로사가 높은 직군인 공무원, 병원 의료인, 교사 등이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보상으로 산재보상 통계 제외. 과로사망 위험이 높은 화물운송등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통계도 없음.
- 12년 동안 매년 과로사망 평균 370명 추락사망 402명
- 추락사망은 95% 산재 승인, 과로사는 산재 승인률 35% 내외임. 실질 발생은 과로사망이 추락사망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복지부 발간 자살백서 업무상 이유로 자살 노동자 매년 600명 내외

[추락사망, 과로사망 산재보상 통계 비교/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분석]

년도	추락 산재사망	뇌심 산재사망
2006	427	565
2007	418	515
2008	468	482
2009	450	320
2010	453	354
2011	452	278
2012	373	301
2013	349	348
2014	363	318
2015	339	293
2016	366	300
2017	366	354
합계	4,824	4,428
평균	402	369

[과로사 산재신청 현황 (2008년 - 2017년 6월 /국감 보도자료)]

구분		전체	금융보협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상수도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기타의 사업	적용 제외
		전체	신청	6,381	160	19	1,857	39	800	723	61	3	39
승인	1,688		51	3	616	10	155	166	6	1	5	675	0
승인율	26.5		31.9	15.8	33.2	25.6	19.4	23.0	9.8	33.3	12.8	25.6	0.0

2) 장시간 노동과 노동자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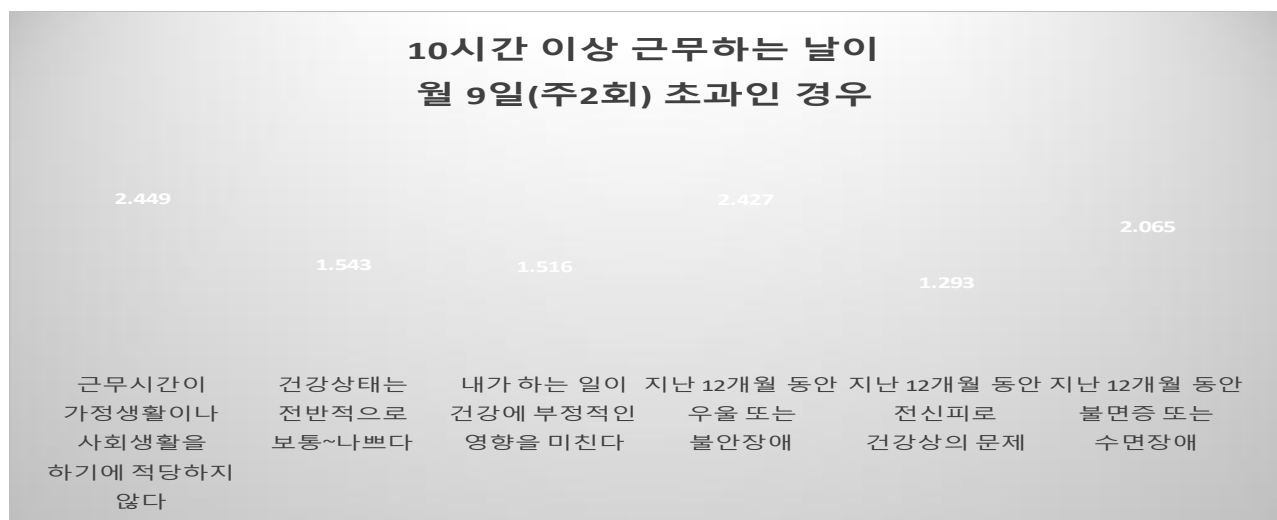
○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실수, 수행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대상 문헌 고찰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11;37(3):173-185

-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8시간 근무하는 사람보다 사고 위험이 50% 정도 높음
- 하루 12시간 이상 초장시간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함.
 -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피로 관련 실수, 사고 위험이 1.3~1.98배 증가함.
 - 12시간 초과하는 근무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1.37~3.29배 증가함.

○ 4차 근로환경 조사 분석

- 4차 근로환경조사 분석 : 한국 노동자 29,113명 대상 조사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건강 및 사고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1. 산업안전공단)

(1) 외국 자료 인용

- 1일 8시간 근로보다 12시간 근로가 사고위험 발생비율이 2배 높음
- 1일 11시간 이상 노동이 8시간 노동보다 심근경색이 3배 이상 증가. 당뇨병은 4배이상 증가
- Spurgeon (2003) 2개 국가 사고조사 연구에서 작업시작 후 9시간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8시간 이상부터는 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Park (2001) 1994sus 120만개 이상의 사고자료 분석에서 사고위험이 근무시간 9시간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2) 3차 근로환경실태 조사 분석

- 요통 발생률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1.85배 높음
- 우울문제는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13배 높고, 불면증과 수면장애는 1.86배 높음
- 결근은 40시간 이하 노동자 대비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2.24배 높음

2. 과로사, 과로자살 통계의 문제

1) 최근 12년 평균 산재인정 과로사 370명 추락사망과 근접

- 일본은 2014년 제정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 (이하 과로사 방지법)에 뇌심질환 산재사망과 과로 자살을 과로사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과로사 정의]

과로사 등이란 업무에서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 질환 혹은 심장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혹은 업무에서의 강한 심리적 부하에 의한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자살에 의한 사망 또는 이들의 뇌혈관 질환 혹은 심장질환 혹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 일본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 제2조 (정의)-

- 한국은 최근 12년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망 노동자가 평균 370명으로 산재사망의 주요 유형인 추락으로 인한 산재사망에 육박하고 있다. 매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이 공무원, 교사, 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이 심각한 직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과로자살이 심각한 영역중의 하나가 공무원, 교사, 의사, 간호사 등이지만, 한국에서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보상체계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통계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문제가 드러난 집배 노동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용형태가 복잡하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 보상체계가 다르다. 이에 집배 노동자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문제가 공공운수 집배노조의 제기 이전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인 운수업 노동자도 대부분이 특수고용 형태로 산재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보험 보장에서 누락되어 있어 아예 통계 접근조차 어려운 직종 노동자다. 화물운송, 택배, 건설기계, 쿼 서비스 등도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이지만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운수업을 비롯한 타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도 동일하다.

- 이에 한국의 실질 과로사 규모는 더욱 클 것임. 전체 돌연사 중 40%이상이 과로사라는 주장도 있어, 뇌심질환 산재사망과 더불어 돌연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2) 과로 자살

- 과로가 미치는 심각한 영향중의 하나로 우울증과 자살의 문제는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미 공론화되었으며, 한국의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에 대한 산재 조사지침에도 이미 과로의 문제는 중요한 조사와 기준이다. 그러나, 과로자살 관련 통계와 분석은 없는 상태이다. 과로사와 더불어 과로자살의 문제가 일찍 사회적으로 제기된 일본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한 산재승인이 2015년에만 471명이고, 이중 자살로 산재인정 받은 건수는 93건이다.

-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41.0%에 달했고, 현재도 계속 3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자살에 이르는 동기별 분석에서도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분석된 인원이 559명에 달하고 있다. 자살 동기 분석이 일선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자살하는 노동자의 실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노동자의 28.6%는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비롯한 재량, 간주 각종 노동시간 특례와 예외 규정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는 더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독행정의 대대적인 개편이 연동되어야 한다. 매년 350여명의 사망이 발생하는 추락사망은 감독행정, 기획 감독, 캠페인, 교육, 사업장 내 선전홍보 등이 진행되지만, 300여명이 과로사망의 현실에 대해서는 보상여부만 쟁점이 되어 왔던 현실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3. 연속휴식시간제도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

1) 한국에 도입된 연속휴식시간 제도

- 특례유지 업종에 <연속휴식시간제도> 도입. 그러나, EU 지침에 의한 유럽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함.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문구가 되어 있음.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함.

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임
- 개정법에서는 휴일근로가 시간외 근로와 동일하게 취급. 현재는 11시간의 연속 휴식만 제기하고, 주휴 확보에 대해서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주 휴일도 휴일근로 실시 가능한 것으로 해석 될 것임
-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실시할 경우 도입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 두었음. 한국의 노동조합 10%내외 조직률과 형해화된 근로자 대표제도의 현실에서는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한 제도로 전략

2) 유럽 등 외국의 탄력근로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유럽의 각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1300- 1600시간인 상황에서 탄력근로제가 도입되고 있는 것이며, 1일 노동시간 상한, 주간 노동시간, 상한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한을 정하고 있음. 특히 탄력근로가 압축적이고 집중적인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시간을 통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EU 지침

-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7일의 평균 노동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회원국이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변형 가능. 그러나 6개월 단위 기간 초과하지 못함.

(1) 독일 (근로시간 법)

- 1일 단위 법정 근로시간은 있음. 연장근로도 1일 10시간 상한
-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 까지 연장 허용
- 연속근무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 부여.
- 1일 근로시간의 종료 이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 보장
- 야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
-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근로제공 금지

(2) 프랑스

-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
- 일부 업종의 경우 주 35시간 초과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1일 및 1주 노동시간의 상한선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및 연속하는 12주 평균 1주 44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시간을 단체교섭으로 정함.
-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 . 통상적 야간근로는 (1일 3시간 이상 및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이상의 야간근로) 단협이 체결로, 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함. 유급의 휴식부여, 산업의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요건으로 함.

(3) 기타 국가

○ 핀란드

-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제한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 도입 시 주 6일 허용.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아, 주 48시간 초과가 될 수 없음

○ 포르투갈

- 헌법 제59조‘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가질 권리’명시. 근로시간 제한 헌법상 권리로
- 연장근로는 보통의 근로일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연장근로의 연장은 불가능
-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만큼만 근로 가능

○ 벨기에

- 1일 8시간. 주당 노동시간 38시간
- 연속성을 가지는 작업,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 대해 최대 11시간 주 50시간 상한 설정

○ 대만

-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총 근로시간 1일 12시간 상한. 총 연장근로 시간 1개월 46시간 상한

○ 싱가포르

- 법정 노동시간 1일 8시간. 주당 44시간
-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당 44시간 미만으로 1일 9시간 노동 상한.
- 탄력적 근로시간 운용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금지

3) 일본의 탄력근로제도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

일본은 연간 노동시간이 1,700 시간대임. 그러나,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2014년 과로사 방지법을 제정하였음. 과로사 발생 사업장은 전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과로사 발생 기업 명단을 공표하며, 과로사 발생 사업장이 법정 처벌을 받고, 기업 임원이 사퇴하기도 함. 2018년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상한 제도를 도입했고, 탄력근로제 도입도 일간, 주간, 월간 노동시간 상한을 도입하고 있음

- 2018년 법 개정 (이른바 일하는 방식 개혁)
- 노동시간 상한제도 도입 (2019년 4월 1일 시행)
 -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10시간, 1주일 52시간 (노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4항). - 단위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 ① 단위기간에서 그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주 연속인 경우 연속하는 주가 3주 한도
 - ② 단위기간을 3개월마다 구분한 각 기간에서 그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주가 3주 한도
 - ③ 연속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일수의 한도는 6일
 - ④ 대상기간 중 특정기간에 연속근로일수도 12일이 한도. 1주에 1일의 휴일 확보 (노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5항)
- 소정근로시간은 과반수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단위기간 개시 30일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특정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과로사 현장 실태

1) 영화 방송 산업

- 영화, 방송제작 현장 노동시간은 많게는 하루 20시간, 적게는 12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음. 촬영은 대부분 새벽에 마감되고, 방송제작스태프들은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해소하기는커녕 다음날 오전 촬영일정에 결합하기 위해 찜질방·사우나 등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사망·부상 사고로 이어짐. 예) 드라마 <킹덤>·<화정>·<여왕의 꽃>, EBS <다큐프라임 - 야수의 방주> 제작스태프 사망사고

- 드라마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 19.18시간, 월 평균 휴일 4.0일¹⁾ / PD·연출 1주 평균 노동일수 5.6일, 1일 평균 노동시간 12.1시간 / 작가 주당 1주 평균 노동일수 5.7일, 1일 평균 노동시간 10.6시간²⁾
-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 지부가291명 대상 실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에도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7.7시간에 달함.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일 단위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 12시간씩 5일 동안 할 일을 3일 동안 하루 20시간씩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됨. 지난 8월 촬영 강행으로 젊은 스태프가 돌연사하기도 함.
- 2018.7.1. 주당 노동시간 68시간 제한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썬수 발생 →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촬영일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추(일명 ‘68시간 총량제’) → 일당제 스태프들은 촬영일수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
- 방송업은 그 동안 특례제도로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 특례 폐지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비책으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SBS, KBS 등)

2) 건설업

(1) 건설현장 관리직 노동자

- 2018년 초 주 52시간 도입 무력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을 받아 300인 이상 건설기업에 탄력근로제 도입
-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탄력근로제 도입
- 과반수 노동자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서면합의 하지 않음. 탄력근로제의 구체적 적용범위, 대상, 시기 정하지 않음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업이 공동수주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근무제 도입이 전체 노동자의 탄력근로제 실시 강요로 이어질 것임.
- 돌관공사나 준공입박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상시적인 장시간 노동이 확대될 것임

(2) 건설현장 플랜트 등 일용직 고용

- 화학 산단, 발전, 제철 등의 정기적인 설비 보수공사의 경우 수 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음. 각 기업들이 설비 보수인력 투입 인원 모집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공사 진행
- 플랜트 노동자의 경우 탄력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 S 기업 설비보수 공사를 4개월 하고 종료한 이후에 H 기업 설비 보수 공사가 개시되어 일하게 됨. 이러한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집중 노동과 단시간 노동이 교대로 진행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용기업은 달라지지만 노동시간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또한, 고용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임금 보전의 방안도 별도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국의 현장을 공사계획 따라 이동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임금 보전의 방안을 찾기 어려움

1) <tvN-사망사건대책위>방송제작환경개선 연구모임(2017), 「드라마 제작 구조와 현장 스태프의 노동 실태」

2) 한국전파진흥협회(2016),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랜서 방송인력 실태조사 연구」

-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이에 따르는 사고발생 감소, 근골격계 질환, 뇌심질환 등 직업병 감소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무력화 됨.

5. 과로사, 과로자살 해결을 위한 과제

1) 과로사, 과로자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

- 포괄임금제, 재량 및 간주 등 각종 노동시간의 특례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반사임. 현행 근로기준법의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방치 및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 널려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처벌도 진행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는 과로사가 당연히 포함됨. 그러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 24조 위반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처벌 조항임. 과로사는 명백한 중대재해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23조, 24조등 구체적인 예방 조치 명시도 없어 과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조항 적용도 안 되는 법의 불비가 있음. 근로기준법 위반의 장시간 노동 사업장,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기업처벌이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책임

2) 과로사, 과로자살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각종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포괄임금제도에 있음
- 포괄임금제의 대표적 업종인 사무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건설업, 택시 등 운송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일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공짜 노동까지 강요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폐지되어야 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정하고 있으나, 연장근로에 있어서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도기준이 <주당> 기준임. 재량근로, 집중근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진행되는 초인적 장시간 노동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더욱 확대되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현장의 왜곡 기형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농후함
- 과로로 인한 사망 및 뇌심질환은 수면시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1일 노동시간의 상한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3)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 감독행정의 개선 대책

- 과로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게임업체 기획근로 감독이 실시되었으나, 사실상 그 동안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치되어 왔음. 노동시간 관련 법령이 형사처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예방감독은 사실상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것임. 임금체불,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문제 등 수 많은 사업장의 법 위반이 만연한 상태에서 감독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있음,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의 주요 영역으로 규정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발생해도 실질적 처벌이 아니라 초과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으로 그쳐왔던 것이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과로사, 과로자살로 이어지게 된 원인임

- 일본은 과로사, 과로자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명단 공표, 입찰 제한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음.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 과로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등이 진행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사업장 개선 및 예방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4) 과로사, 과로자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상의 대책

- 산업보건의 영역을 넘어 과로사, 과로자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명시적으로 보완하고, 사업주의 조치 사항도 확대하며, 사업주의 예방조치에 대한 사업장 감독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특히, 일부 업종과 현안에 대한 기획 감독과 감독이후 시정조치가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5)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상담 및 지지 지원체계의 구축

- 한국에서는 과로사, 과로자살의 과정에서 노동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담 및 지지 지원체계가 전무함. 이에 수많은 과로사, 과로자살이 드러나지 않고, 과로사, 과로자살을 입증하고자 하는 유족들은 지난한 과정에서 2차, 3차의 피해를 입고 있음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 개정, 감독행정의 변화와 더불어 지지 및 지원상담체계의 구축과 과로사 및 노동권에 대한 교육의 대대적인 실시가 필요함

□ 참고자료3 :기업처벌 현황(중대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사례)

I. 산업재해

1.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 (2016년 6월 28일, 5명 하청노동자 전신화상, 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고려아연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5,000만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총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공장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500만원
	온산제련소 배소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배소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대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온산제련소 정비2팀 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1,000만원
하청회사	한림이엔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한림이엔지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700만원
	현장 안전관리 직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벌금 500만원

- 2016년 6월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제조설비 보수공사 도 중 황산 3만9000리터 누출. 황산 누출은 배관에 든 황산(농도 95%)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

- 5명의 하청노동자가 전신화상 입고, 2명은 끝내 사망. 시설 보수 공사에 100% 하청도급 업체 노동자만 고용

- 고려아연은 협력업체인 한림이엔지 측에 설비 내에 황산이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드레인(Drain) 작업도 실시하지 않은 것. 현장 안전점검 없이 안전작업허가서를 한림이엔지에 무단 발행해줬으며, 한림이엔지 역시 노동자들에게 방산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

- 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위험업무를 도급한 원청의 책임자들은 금고 형에 그치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함. 법인에 대한 처벌도 원청 5천만원, 하청 1천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

2. 메탄올 중독 실명사고 (2016년 2월, 6명 파견노동자 실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삼성전자			
	LG전자			
3차 하청업체(사용사업주)	YN테크 석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80시간 사회봉사	
	BK테크 안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 80시간 사회봉사	
	덕용ENG 조모씨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검찰 항소, 항소 기각
인력파견업체(파견사업주)	누리잡 (YN테크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드림아웃소싱 (BK테크에 파견) 원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600만원	
	플랜에이치알 (덕용ENG에 파견)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400만원	
	대성컴퍼니 갈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벌금 200만원	
	서울솔루션 이모씨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 2016년 2월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 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메틸알코올(메탄올) 중독 실명 사건이 알려졌고, 심지어 노동부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도 발생.
- 인천, 부천 공단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20대 청년노동자 5명이 실명위기. 2016년 10월 초 피해 노동자 2명이 추가 확인.
- 원청인 삼성, LG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구멍 난 노동부 검검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은 지속적인 추가 피해자를 양산.
- 사업주들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 1심 재판이 끝난 뒤 3명의 사용사업주(하청업체 운영자)와 5명의 파견사업주(파견업체 대표) 가운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는 한 명도 없었음.

<CNC 가공공장 메탄올 중독 피해환자군 사례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발췌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 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차,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차,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 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 물질로 전환함으로써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3.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2015년 8월 29일, 28세 하청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서울메트로 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강남역 부역장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서울메트로 지하철 CM센터장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하청회사	유진메트로컴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 배임	벌금 2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기술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광고사업본부 사장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벌금 1천만원
	유진메트로컴 신사업개발부 전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지하철 역사 관리와 직원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2015년 8월 29일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혼자 작업하던 조모(28·사망 당시)씨가 진입하는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
- 2018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
-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보고받은 서울메트로 사장이 작업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 서울시와 합의 하에 구성된 진상조사단 보고서에서는“강남역, 구의역 등 스크린도어 사고는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삼은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의 결과이다....(중략)...안전 수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와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치장물로 전략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도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중략)...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중략)...유기적 연계 업무에서 소통의 부재는 결국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기술. 즉,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참사.

- 우리의 법체계상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데 장애는 없음. 다만, 그런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점으로 드러남. 무분별하게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원청이 지지 않는 현실.

4. 청주 에버코스 지게차 운전자 사망 사고 (2015년 7월 29일, 30대 노동자 사망)

	직책	죄명	1심
원청회사	에버코스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7백만원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소속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구매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에버코스 상무이사, 공장장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	에버코스 구매팀장과 공동범행 업무상과실치사	
	에버코스 안전관리업무 실무자 (안전문제 지적 받아옴)		
	에버코스 구매과장 (119신고 취소)		
	에버코스 수주물류팀 팀장 (피해자를 승합차에 실음)		

- 2015. 7. 29. LG생활건강의 하청업체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청주의 에버코스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5분간 끌려가는 사고를 당한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사측의 산재 은폐와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 경찰의 침묵으로 그냥 평범한 사고로 묻힐 뻔했으나, 8. 18. JTBC “뉴스룸”에서 현장 CCTV를 공개하고 “사측이 출동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 이송을 기다리며 방치하는 사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알려짐

- 8월 24일부터 5일간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지난 3년간 에버코스가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29건에 달하는 산재 은폐 드러남. 이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고, 과태료만 1억7천5백만원을 부과.

- 2015년 9월 1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소속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 10명이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지게차로 고인을 충격한 점과, 큰 부상을 당한 고인을 1시간 이상 방치한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산재은폐 및 증거인멸의 시도로 봄.

-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2015년 9월 30일 에버코스 전

태영 대표를 구속. 2016년 5월, 검찰은 고발 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통보. 전태영 대표이사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 인정했고, 증거인멸, 업무상과실치사죄, 살인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에버코스 법인의 경우에는 위 각 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

- 1심 판결에서도 지게차 운전자에게만 금고가 선고 되었을 뿐, 대표이사과 법인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전부.

5. 광주 남영전구 공장 집단 수은중독 사건 (2015년 4월, 21명 급성 수은중독)

	직책	죄명	1심	2심/최종심
원청회사	남영전구 주식회사 법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억	벌금 2억
	남영전구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물류센터 이전 총괄 책임자(부장)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환경관리인 (차장)-공사현장 관리감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검사 항소 기각
	남영전구 모그룹 기술관리실 부장-안전문제 기술검토 차 파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폐기물관리법 위반(무죄)	검사 항소 기각
하청회사	하청업체 실운영자, 현장책임자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 2015. 3. 23.부터 2015. 4. 7.까지 진행된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제조시설 철거 작업에 투입된 철거업체의 하청노동자들이 집단 수은중독현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

-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1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 14명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는 그중 12명의 신청을 승인. 2명은 사업자로 분류 돼 산재 불승인 처분.

-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 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

6. 한화 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망 사건 (2015년 7월 3일, 하청노동자 6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항소
원청회사	한화케미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공장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벌금 5백만원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1,2,3공장 생산담당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PVC생산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1,500백만원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공무2팀 대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회사	하청업체 대표 - 공해방지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하청업체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산업안전사고예방강 의 40시간 수강	

- 2015. 7. 3. 오전 9시16분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안 폐수처리장의 폐수저장조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
- 28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사망
- 검찰 수사결과 △ 한화케미칼은 폐수집수조 내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게 용접작업을 지시하였으며, △ 하청업체 역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
- 법원 : 원청업체에 벌금 1천5백만 원, 기소된 다수에게 집행유예 정도만 선고

7.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3년 3월 14일, 사망 6명, 부상 11명)

	직책	죄명	항소심	최종심
원청회 사	대림산업(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벌금 3,500만원
	대림산업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 보건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무죄	(파기환송) 징역 8월
	노동자들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8월-1년
하청회 사	유한기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000만원
	유한기술 제작사업본부장, 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안전조치 불이행,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 사용)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
	유한기술 안전팀 과장(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천만 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2.19. 선고 2013노2217 판결)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업의 이윤 획득과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만을 추구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안전감시·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구조적인 원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여수대림공장 공장장의 양형(징역 8월)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원인과 유사한 원인, 즉 ‘이윤 획득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부족, 그리고 미흡한 안전관리 제도에서 비롯된 안전 의식의 부재’는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유죄가 인정된 공장의 해당 작업허가 담당자와 현장 작업감시자 그리고 현장 작업감독자에 대해서 양형을 할 때에는 양형 참작에 있어 이들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되었다.

- 법원의 판단대로 회사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여수공장 공장장의 형이 가중된다면 이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 구조적인 원인은 공장장인 자신의 책임이 아니거나, 자신만의 책임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처벌에서는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 그 형이 낮추어진다면, 이 구조적인 원인을 유발한 '주체'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주체인 대림산업은 1, 2심에서 폭발사고 관련 위반 사실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겨우 대법원에서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수억 원을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노동청의 특별감독(1000건이 넘는 위반)에서 드러난 안전상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에 선고 받았던 벌금 3천만 원에 덧붙여 벌금 5백만 원을 추가로 선고받게 되었다.

- 다른 한편으로 위반죄명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림산업은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으로 이러한 벌금형을 부과 받는 것이다. 이 위반죄는 중대안전사고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폭발위험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의 미이행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법원의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요인은 이러한 대형 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이다. 중대한 사망사고를 유발한 구조적인 요인을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지는 않았다.³⁾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8.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 질식 사고(2013년 5월, 5명 사망)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최종심
원청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벌금 5,000만원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혐의 (검찰)
	생산본부장(부사장/안전보 건관리책임자, 중대재해예방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건조치위반, 도급사업시 안전조치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6월) 사회봉사160시간

- 경찰은 사고원인을 정비본부 제강기계팀 팀장 등이 전로 내화벽돌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전로에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곤 가스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았다. 산업보건법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산소 농도를 측정

3) 심재진.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한 후 환기시설을 점검하는 등 ‘밀폐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업체 측에서 전로 내부를 밀폐 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과실도 확인 되었다.

- 노동건강연대, 당진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23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책임을 묻고 있고, 29조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며, 현대제철 법인과 우유철·박승하 사장(복수 대표이사)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 검찰은 근로보수작업 총책임자인 현대제철 생산본부장 및 직원 8명과 하도급업체 한국내화 부사장을 포함한 직원 3명 등 총 12명을 기소했으나, 대표이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 법원은 현대제철에 벌금 5천만 원, 생산본부 총괄책임자였던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부사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산소측정기를 지급해야 할 곳은 원청이 아닌 하청업체 라면서 항소하였고, 2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았다. 법원이 원청의 잘못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 벌금만 부과하는 등 기업에 관용을 베풀었다.

9. 노량진 지하철 공사장 수몰 사고(2013년 7월 15일, 사망 7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8)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금고 2년(집유 3년)
	책임감리관 이모(49)씨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1년6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4)씨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2년
	노동자	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2년(집유 3년)

- 재판부는 "권씨는 범람하는 물을 막으려고 설치한 차수막의 성능이 좋지 않고 사고 당일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몰 우려가 있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박, 이씨에 대해 "(이들이) 차단막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치를 승인한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일 미흡하게나마 위험 주의 조치를 이행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에게는 "공사 현장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책임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임시시설 붕괴사고(2013년 12월 19일, 사망 4명)

	직책	죄명	1심	2심
원청회사	SK건설 현장소장 신모(49)씨	임시 시설물의 붕괴 위험을 보고받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8개월(법정구속)	징역 8개월(집유 2년)
하청회사	하도급업체 삼정 소속 현장소장 이모(53)씨	같은 혐의	징역 1년	징역 1년(집유 2년)
	감리회사 길평 소속 보조감리원 오모(44)씨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1. LG화학 청주공장 다이옥산 폭발사고(2012년 8월, 사망 8명, 부상 3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2. 국립현대미술관 (2012년 8월 13일, 사망 4명, 부상 24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1,500만원
	안전과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300만원 또는 기소유예
하청회사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200만원
	현장소장 등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00-300만원

13.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 (2008년 1월 7일, 40명 사망, 10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⁴⁾	최종심
원청회사	(주)코리아2000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2천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벌금 2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 벌금
발주자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벌금 등

(주)코리아2000 냉동설비공사는 ‘코리아냉동(발주처)-코리아2000(원청) - 유성엔지니어링(하청)-한우·동신·HI코리아(재하청)-팀장(오야지)-건설일용근로자’의 구조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청업체인 (주)코리아2000은 하청업체의 인력운용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감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유성냉동설비(34명), 한우전기설비(17명), 아토테크에어컨설비 및 청소업체 직원(6명) 등이 공사를 하청받아 여러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공사 인력을 배치했다. 결국 유증기가 가득 찬 위험한 공사현장에 비숙련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했으며 공사 책임자는 그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셈이다.

(주)코리아2000은 24억의 냉동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억 이상 공사는 원청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를 위반하였다. 또한, 동법 제29조에 의거 자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하청소속 근로자, 용역업체에서 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등 각종 재해시 대처방안교육 등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0명이 사망한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주)코리아2000은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화재사고 관련자 10여명이 벌금 1,000만원 벌금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조항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가스 등이 산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풍 및 환기 등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인화성 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9조: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 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해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작업을 하는 때는 폭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호스 및 배관 점검 등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못 박고 있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66조: 사업주가 가연성가스, 화학류 등 가연성물질이 존재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꽃,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나 기계·기구, 공구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67조: 유류 등이 들어있는 배관이나 용기 등의 용접을 제한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258조: 통풍 등이 불충분한 곳에서의 용접을 제한

14. GS리테일 서이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12월 5일, 6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혐의(검찰)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3천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1년의 집행유예(2년) 금고 6월의 집행유예(1년)

15. 이천시 GS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붕괴 사건 (2005년 10월 6일, 사망 9명, 부상 5명)

	직책	죄명	최종심
원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7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하청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벌금 1,500만원
	대표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벌금200만원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노동자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1년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

II. 일반 공중 재해

1.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차 진행되지 않으면서, 총괄 책임인 해수부 장관, 청와대 핵심 책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임.

가. 망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2014.11.5.)	2심 (2015.5.22.)	3심 (2015.09.24.)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2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병언 전 회장 사망.
- 유대균 감형이유: 전과가 없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을 유병언일가에게 묻겠다며 1심에서 재산추징을 했으나, 2심과 3심에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에서 추징은 제외. 이에 유대균은 검찰이 사전에 추징한 40억을 돌려달라며 9월말 민사소송 제기. 법조계에서는 유대균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9월말 유대균을 상대로 431억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2015. 10.16일 언론보도)

나. 청해진해운 임원 및 직원에 대한 판결

직책	죄명	1심 (2014.11.20.)	2심 (2015.5.12.)
대표이사(김한식)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징역 7년, 벌금 200만 원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월, 벌금 200만원	항소 기각
세월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 기각

- 감형이유: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
- 상고심 일정 아직 시작되지 않음.

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재판

-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등 선원 15명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1심 재판부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살인죄 무죄, 유기치사로 징역 36년 선고
- 2심 재판부 선장 살인죄 적용 무기징역 선고. 기관장 살인죄 무죄.

라. 민간 잠수사 사망 관련

-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 사망
- 해경이 선임 민간 잠수사 공0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발
-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마. 세월호 참사 관련 공무원 처벌

* 자료는 유성엽 의원실 / 미디어 오늘 보도 인용자료임

○ 해양수산부 처분 결과

- 세월호 승선을 인가해 준 공무원 4명중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

처분대상자 (당시 인천청 직급)	비위유형 (사유 구체)	감사원 처분요구	징계위원회 결정	최종 징계결과
박00 (주부관)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중선) 최종 인가 부당 처리	정직	정직2월 (2015.3.6)	정직2월(2015.3.13) →감봉3월로 감경 (소청심사)
이00 (행정사무관)	- 2012.8.14 청해진해운의 선박 도입 지연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기한을 연장 승인 - 2013. 3. 14. 사업계획변경시 2011년도 조건부 인가 당시 자료를 근거로 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운송수입률이 관련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인가	정직	정직1월 (2015.3.6)	정직1월(2015.3.13.) →소청심사 안함
김00 (선원해사안전과장)		정직	정직1월 (2015.4.10)	정직1월(2015.4.17) →감봉2월로 감경 (소청심사)
김00 (청장, 현재 국토부)		정직	감봉3월 (2015.4.10)	감봉3월(2015.4.24) →감봉1월로 감경 (소청심사)

○ 한국선급 처분 결과

- 세월호 복원성, 선령연장, 건조검사를 담당했던 검사원들에게 인사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 경고의 경징계. 당초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경

○ 한국 해운조합

-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지라에 대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미루다가 2015년 7월7일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 징계하지 않음

- 심지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중 일부가 아무런 징계 없이 선박안전 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음

-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총 15명인데, 이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 이중 결격사유로 미임용 2명, 임용되었다가 1심 재판결과로 임용취소등을 제외하고 5명은 운항관리자로 현재 근무 중임.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변동이유 (감정내용)
이00 팀장 책임검사원	경사시험 결과서 및 복원성 계산서 승인업무 부당처리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조00 선임 수석검사원	선령 연장검사 업무 태만	부지정	경고 (2014.11.11)	포상감경 (견책→경고)
전00 선임검사원	세월호 별도건조검사 업무태만	정직	감봉3월 (2014.11.11)	포상감경 (정직1개월→감봉3 개월)

처분대상자	지적내용	감사원 처분요구	최종결과 (처분날짜)
전00 주임	세월호 차량 및 화물적재초 과 미확인, 고박상태부실점 검	징계	2015.7.7. 면직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선박안 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운 항관리 직제와 정원 폐지)

○ 해경 간부와 구조업체 언딘의 유착관련

- 사고 직후 인근에 있던 바지선이 아니라 <언딘>의 바지선이 도착할 때 까지 기다려 구
조작업 지연

- 해경간부와 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경간부 박 0 총경과 00 경감을 재판
에 회부

- 관할 법원의 문제로 1년 이상 심리조차 열리지 않음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동아건설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죄	금고 2년	금고 2년
서울시 동부건설 사업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삼풍그룹,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업무 상 횡령), 뇌물공여	징역 10년 6월 (7년6월 + 3년)	징역 7년 6월 (업무상횡령 무죄로 3년 감형)	상고 기각
삼풍백화점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징역 7년	항소 기각	-
삼풍백화점 시설이사	업무상과실치사상, 뇌물공여	금고 2년	금고 1년	-
서초구청장 (이충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징역 3년 추징금 1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만원
서초구청장 (황철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징역 2년 6월 추징금 1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징역 10개월, 추징금 200만원

사고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25명이었다. 삼풍그룹 회장, 삼풍백화점 회장, 삼풍백화점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7년 6월 등의 형이 확정되었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의 조짐이 있었으나 삼풍백화점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붕괴 직전까지도 고객과 종업원들의 안전보다는 영업손실만을 걱정하다 자신들만 대피했다. 그러나 이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약했다. 애초에 이준 회장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붕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의도했다는 증거 없이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이준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구속되었으며 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

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고사를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것도 예외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죄에 비하면 처벌이 낮은 편이다.

4.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대구지하철공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0만원	-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	징역 3년	징역 1년6월	무죄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	증거인멸	무죄	-	-
1079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4년	금고 4년	상고기각
1080호 기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5년	금고 4년	상고기각
운전사령실 사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3~4년		상고기각

대구지하철 사고는 기관사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기관사 및 관제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받아 4-5년의 금고형을 받았다.

1인승무제 아래서 기관사가 혼자 위급상황 대처, 승객대피, 사령교신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나 비상유도등·피난로·소화설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피가 어려웠던 점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이라 볼 수 있지만, 결국 회사의 책임자는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기소가 되긴 했지만,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아니라 사고 직후 물청소를 지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 증거인멸혐의였다. 물청소는 유류품 및 실종자 시신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루어져 유족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지만,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책임자 처벌에서도 드러난 혐의 차이는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5.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사고 (2005년 10월 3일, 11명 사망, 145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3심
국제문화진흥협회 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징역 1년	원심 양형 유지	상고를 모두 기각
국제문화진흥협회 실무부회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6월		
상주시 행정지원 국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 과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집유 2년)		
새마을과 6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수수	징역 10월(집유 2년)		
당시 상주시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년6월(집유 2년)		
MBC PD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경호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2년	향소포기	
민족문화교류협회 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10월(집유 2년)	향소포기	향소포기

6.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2007년 2월 11일, 10명 사망, 1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심
출입국사무소 경비계장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향소
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공문서 위조	징역 1년	향소
출입국사무소 관리과장(사무소장 직무대행) 사무관	소방훈련 일지 허위 작성	징역 10월(집유 2년)	향소
경비과장인 사무관	허위 공문서	징역 8월(집유 2년)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금강의 경비원		금고 1년(집유 2년)	
관리과 8급 직원		벌금 800만 원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직책	죄명	1심 (2013.12.23.)	2심 (대전고등법원 2014노177)
유스호텔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향소기각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징역 6월	
유스호텔 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1년	향소기각
코오롱트래블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해병대캠프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향소기각
캠프교육팀 본부장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교관 A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2년	금고 2년 6월
교관 B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4월	향소기각

8.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94명 부상)

피고인	직책	죄명	1심 (2014.9.5.)	2심 (2015.4.2.)	3심 (2015.7.9.)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업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향소포기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설계감리	공사설계감 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 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건축구조 기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고포기
시공 (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상고포기
시공 (하청)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6월

A개발		위반 (무등록 건설업)			
시공 (하청) E강제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상고포기
	영업부 상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C강제 재하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포기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와 코오롱건설 차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체육관 신축을 서둘렀고, 사고의 근본원인이 이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지 않았다. 기소는 총 14명과 법인 1곳이 되었다. 구속기소는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 및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총 6명 이었고, 불구속기소는 9명(법인 1곳 포함), 약식기소는 6명(법인 1곳 포함)이었다.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빠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관련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이 중 11명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7명의 형량을 줄여줬다. 1심에서 금고 2년 4월의 유죄를 선고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이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에도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사법부의 현실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공기 단축뿐 아니라 폭설에 대한 관리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은 별 건 수사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9.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 사고 (2014년 5월 26일, 9명 사망, 115명 부상)

업체	직책	죄명	검찰 기소	1심 (2015.1.30.)	2심 (2016.3.9.)
공사발주업체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4년	(무죄)	(무죄)
	직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금고 4년	(무죄)	(무죄)
	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자산관리업체 (쿠시먼)	간부			(무죄)	(무죄)
	직원			(무죄)	(무죄)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방재주임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6월	징역 1년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소방시설법		징역 2년6월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용접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배관 작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사 수급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2년6월	
	직원A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징역 2년	
	직원B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		금고 1년(집유 2년)	

검찰은 공사발주업체인 CJ푸드빌 직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2014고단1934)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이들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0.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직책	죄명	1심 (2014.11.21.)	2심 (2015.6.18.)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징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이유: 재판부는 이사장의 화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수 유족과 합의하고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항소심 재판 중 숨진 김 모 피고인의 방화였던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으며, "이 씨가 병동의 벽체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것이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피해 발생이나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임.